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

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(융자계획)에 따라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2. 4.

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

1. 사업목적

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

2. 융자규모 및 한도

- 융자규모: 금20,000,000원(금이천만원)
- 융자한도: 업종별·사업규모별 2,000만원 이내(예산범위)
- 3. 사업기간: 2025. 2. 10. ~ 11. 28. (※ 단, 예산액 소진 시 사업 종료)

4. 융자대상

- 「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」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7조 제3항에 따라 **어린이**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·보수 하려는 업소

《융자신청 제외대상》

-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
-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
-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
-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(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예외)

5. 대상사업

- O 영업장의 시설개선*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·설비** 등
 - * 식품접객업소의 객실, 객석,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
 - **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 개선 등
- O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및 준비업소에서 위생관 리 시설을 개선 확충하려는 경우(단, 2년 이내 HACCP 신청 조건)

6. 융자한도

구 분	업 종	한 도 액
시설개선자금	식품제조가공업	2천만원
	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소, 건강기능식품판매업	2천만원
	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	1천만원
	화장실 시설개선자금(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)	2천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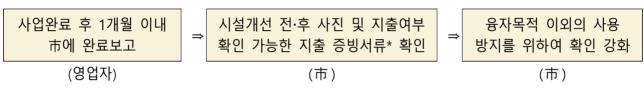
- ※「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제6조(융자금액 및 상환조건) 범위 내 필요 시 추가 예산 편성
- O (대출기간)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- O (대출금리) 연리 1.5%
- O (대출절차)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

7. 융자금 회수조건

- 융자금 수령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,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와 협의 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
- O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O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, 허가취소, 등록취소, 영업장 폐쇄, 직권말소 및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한 경우
- O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경된 경우

8. 융자업소 관리

- O 융자대상으로 확정된 업소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함
- O 융자받은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 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함
- O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금을 환수 조치하고 5년 이내 동 자금을 융자하지 아니함
- O 사업완료 보고 절차



* 지출 증빙서류: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명세서 등

9. 융자신청 및 접수

- O (접수기간) 2025. 2. 10. ~ 11. 28. ※ 단, 기금액 소진시 사업 종료
- O (신청방법) 방문 및 우편접수
- ※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,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(3층 310호)
- O (제출서류)
 -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,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등 각 1부(서식1,2)
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*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

10. 기타사항

-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 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(부동산 담보 제공 등)
- O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

11. 문의사항

○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(☎044-300-5732)